

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일
신고인	성 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업소명	신고번호	
	업소 소재지	(전화번호)	

변경사항		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·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구비서류	1.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2. 변경되는 대표자가 「약사법」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단서(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기타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5,0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

